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08

발의연월일: 2020. 11. 11.

발 의 자:이주환·김기현·박덕흠

양금희 • 이철규 • 임이자

전봉민 • 정동만 • 최승재

한무경 • 황보승희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지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산림청장등은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설비 설치를 위하여 조사·점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과 집중호우 등으로 전국에서 6,175 건(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산지태양광발전설비에서 27건의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하여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발전 설비의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울러 산림청장등 은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중에서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조사·점검·검사를 하되 그 권한을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9항 및 제37조제6항 신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중 "그 밖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 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37조제8항에"를 "제37조제9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7조제6항"을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6항"을 "제3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7조제8항에"를 "제37조제9항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6항"을 "제3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7조제8항에"를 "제37조제9항에"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에"를 "산지태양광발전설비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로 한다.

⑥ 산림청장등은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중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조사·점검·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제37조제6항에"를 "제37조제7항에"로 한다. 제55조제7호 중 "제37조제6항"을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 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 고) ① -----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 -----「신에너지 및 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 치, 그 밖에-----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 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 음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산 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 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저 ①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 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 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 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 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 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

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8

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	<u> </u>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u>한다.</u>
세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는 등)
①	
1.・2. (현행과 같음)	
3	
<u>제37</u>	<u>'조제9</u>

- 4.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 5. 6. (생략)
- ②·③ (생 략)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저

- ① 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_
4. <u>제37조제7항</u>
5.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1)
<u>.</u>
1. ~ 4. (현행과 같음)
5. <u>제37조제7항</u>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 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 8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 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 · 8. (생략)

② (생략)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따른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무상양여를 취소할수 있으며,토석채취의 중지,시설물의 철거,산지로의 복구,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다만,제6호의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무상양여를 취소하여야한다.

- 1. ~ 3. (생략)
- 4.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

6
제37조제9
 항나에
7.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
여의 취소) ①
1. ~ 3. (현행과 같음)
4. <u>제37조제7항</u>
5

6. ~ 8. (생략)

② (생략)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 ② 저 (생 략)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에 대한 현황,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신설>

항에	
6. ~ 8. (현행과 같	<u> </u>
② (현행과 같음)	
세37조(재해의 방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u> </u>	
	<u>산지</u>
태양광발전설비에	
	1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산림청장등은 ㅇ	<u> 미 설치된</u>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중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	설비에 대하
여 조사·점검·검사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업무	

⑥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 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 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 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 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 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 역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다.

1. ~ 4. (생 략)

<u>⑦</u>·<u>⑧</u> (생 략)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u>⑦</u> <u>제1항·제2항</u>
<u>및 제6항에</u>
1. ~ 4. (현행과 같음)
<u>⑧</u> · <u>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5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 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 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 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 다.
- 1. <u>제37조제6항에</u> 따른 재해방 지 조치 의무
- 2. ~ 5. (생 략)
-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6. (생략)
 - 7. <u>제37조제6항</u>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u>제37조제7항에</u>
2. ~ 5.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제55조(벌칙)
제55조(벌칙)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